

# 2016년 양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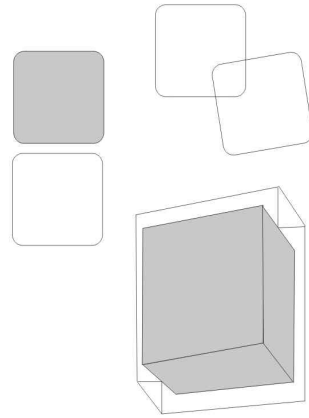
2016. 2. 29.(월)

양 주



-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5,85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6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5,938억원)보다 8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8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9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억원입니다(※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
-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8.94 %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02 %입니다.
-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1 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한 225억원의 임시적 세입수입과 전년도말 체납징수금 7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흑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김윤희(031-8082-5073)



## VII. 양주시 재정공시 작성목록



1. 공통공시 총괄 .....	3
2. 예산규모 .....	4
3. 재정여건 .....	7
4. 재정운용계획 .....	11

#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양주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5,858	4,889	969	5,938	5,639	299
	세 출 예 산	5,858	4,889	969	5,938	5,639	299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 당 초 ]	38.94	34.5	4.44	31.18	29.64	1.54
	재 정 자 주 도 [ 당 초 ]	70.02	65.7	4.32	66.34	65.75	0.59
	통 합 재 정 수 지 [ 당 초 ]	111	8	103	1	22	△21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구분 : 2015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적용

※ 인구,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표준화 지수값을 구한 다음 인구, 재정력, 재정규모는 각 30%, 인구증가율은 10%의 가중치를 부여함

유형	유사단체				
	시 -(3) 19개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

## 2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양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억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58	4,679	724	350	10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811	5,113	4,979	4,889	5,85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억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30	100	4,104	100	4,021	100	4,087	100	4,679	100
지방세	1,058	26.26	1,054	25.69	1,078	26.80	1,082	26.49	1,150	24.59
세외수입	282	6.99	251	6.12	164	4.08	171	4.19	432	9.22
지방교부세	823	20.42	960	23.38	1,010	25.12	945	23.12	1,115	23.83
조정교부금 등	275	6.82	246	5.99	234	5.82	333	8.15	339	7.25
보조금	1,592	39.50	1,593	38.82	1,420	35.32	1,400	34.26	1,403	29.9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115	2.86	155	3.79	240	5.1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양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58	4,679	724	350	10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811	5,113	4,979	4,889	5,85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억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30	100	4,104	100	4,021	100	4,087	100	4,679	100
일 반 공 공 행 정	335	8.31	368	8.95	297	7.38	408	9.99	463	9.89
공공질서 및 안전	215	5.32	50	1.23	62	1.54	47	1.14	23	0.49
교 육	73	1.80	70	1.71	79	1.96	83	2.04	86	1.83
문 화 및 관 광	298	7.41	265	6.47	198	4.91	207	5.07	203	4.34
환 경 보 호	329	8.17	541	13.19	391	9.72	417	10.21	427	9.14
사 회 복 지	1,005	24.94	1,147	27.94	1,323	32.89	1,265	30.96	1,450	30.99
보 건	49	1.22	51	1.24	53	1.31	69	1.69	77	1.64
농 립 해 양 수 산	231	5.74	239	5.82	231	5.74	240	5.87	384	8.20
산 업 · 중 소 기 업	123	3.06	152	3.71	21	0.51	36	0.87	41	0.87
수 송 및 교 통	426	10.57	394	9.60	539	13.41	467	11.44	580	12.3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23	10.50	233	5.68	180	4.47	226	5.54	261	5.57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40	1.00	64	1.56	85	2.11	50	1.23	56	1.19
기 타	482	11.97	529	12.89	564	14.03	571	13.96	629	13.45

###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858	6,215	6,439	6,496	6,597	31,602	3.00
자 체 수 입	1,823	1,826	1,886	1,955	2,007	9,495	2.50
의 존 수 입	3,259	3,452	3,622	3,731	3,847	17,911	4.20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6	937	931	810	742	4,196	-1.10
세 출	5,858	6,215	6,439	6,496	6,597	31,602	3.00
경 상 지 출	1,378	1,507	1,542	1,425	1,371	7,220	-0.10
사 업 수 요	4,480	4,708	4,897	5,071	5,226	24,382	3.9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양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4,987	5,957	973	19.5
양주시	4,889	5,855	969	19.81
공사·공단	87	93	6	6.8
출자·출연기관	11	9	-2	-1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1개) :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 3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양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94(33.7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8.94 ( 33.78 )	4,679 ( 4,679 )	1,822 (1,582)	2,857	0 ( - )	- (24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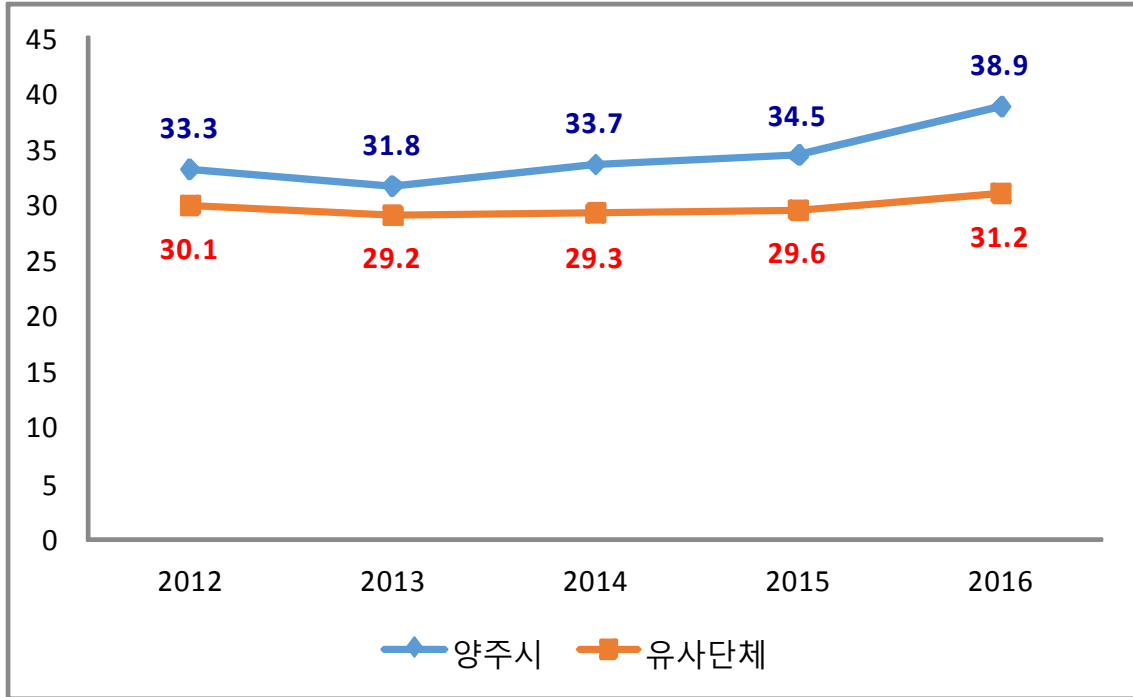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33.25	31.81	33.74 ( 30.88 )	34.47 ( 30.7 )	38.94 ( 33.8 )
최종예산	30.13	31.75	38.10 ( 31.16 )	34.90 ( 28.1 )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당초예산, 세입과목 개편 전)

(단위 : %)



☞ 우리시는 유사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특히 2016년은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 수입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4.4% 상승하였습니다.

###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양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0.02(64.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0.02 ( 64.9 )	4,679 ( 4,679 )	3,276 ( 3,036 )	1,403 ( 1,403 )	0 ( - )	- ( 240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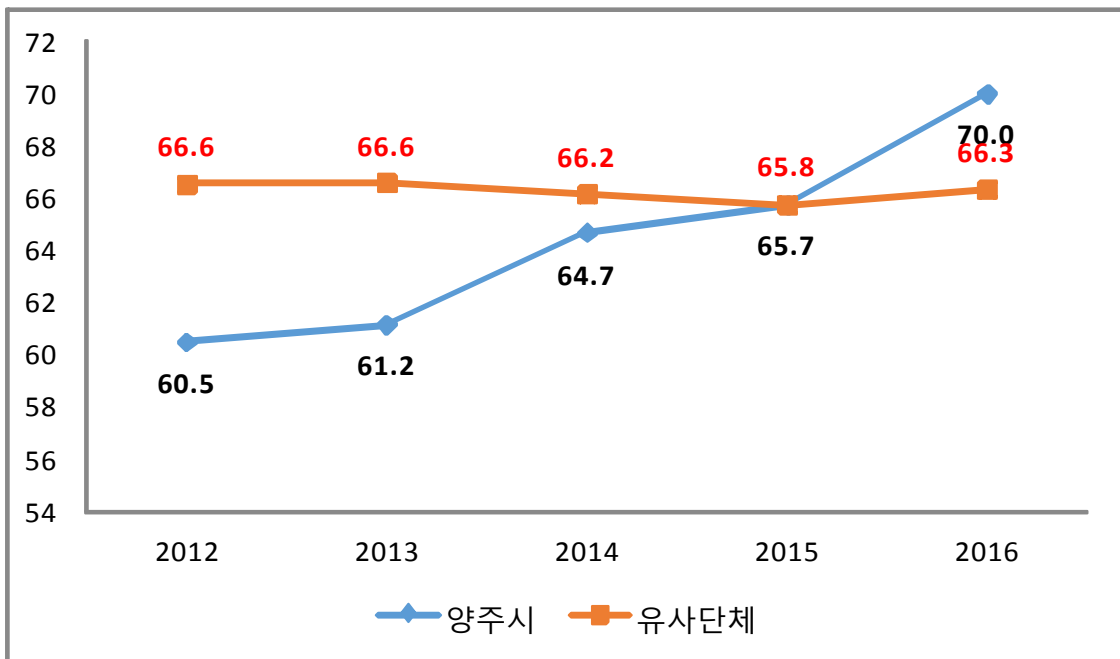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0.50	61.18	64.68 (61.82)	65.74 ( 61.9 )	70.02 ( 64.9 )
최종예산	58.52	61.24	68.36 (61.41)	66.26 ( 59.5 )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당초예산, 세입과목 개편 전)



☞ 유사단체는 재정자주도가 5년간 거의 유사하나 우리 시는 60.5%에서 70%로 상승 하였습니다. 자체재원 구성비율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구성비율은 감소한 이유입니다. .

###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양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01	5,278	4	138	134	422	5,412	-311	111
일반회계	4,439	4,332	0	100	100	240	4,432	7	247
기타 특별회계	136	234	4	15	11	168	245	-109	59
공기업 특별회계	520	701	0	23	23	14	723	-204	-190
기 금	7	11	0	0	0	0	11	-5	-5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67	-293	-205	-241	-311
통합재정수지 2	30	36	5	8	111

☞ 2015년도 말에 징수된 ○○개발 체납징수금 7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가 심화되었으나, 통합재정수지 2는 흑자폭이 증가되었습니다.

## 4 재정운용계획

###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양주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8	346
여성정책추진사업	5	23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1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0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858	0	3

- ▶ 우리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시행하였고 최종 선정된 사업 3건에 대한 사업비 약 2억원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 표준모델(모델유형은 지자체 조례 내용과 구성으로 구분)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제1회 추경 예산 반영예정)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b>총 액</b>		<b>205</b>	
도로과	마을안길(현석로 733번길) 정비사업	60	신규사업
“	노후교량 교체 및 보도 설치	65	”
“	마을안길 배수시설 정비사업	80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http://www.yangju.go.kr/site/budget/sub.do?Key=3982>)를 참조하세요

###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양주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b>계</b>	<b>11</b>	<b>107</b>	<b>236</b>	<b>232</b>	<b>5,029</b>	<b>4,295</b>	<b>734</b>
시민소통담 당관	1	6	6	7	19	17	1
감사 담당관	1	1	4	1	1	1	0
행정 지원국	1	24	50	57	1,267	1,198	69
민원 서비스국	1	9	16	15	21	19	2
경제 복지국	1	21	59	52	1,650	1,527	122

안전 도시국	1	22	39	40	942	829	113
보건소	1	2	13	13	74	67	7
농업 기술센터	1	5	15	19	319	160	159
도시환경 사업소	1	15	27	24	629	388	241
시립 도서관	1	1	2	2	45	34	12
의회 사무과	1	1	5	2	10	9	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 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8.94	70.02	30.99	30.15	45.52	28.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12	354	- 15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6 (- 위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45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7	46	- 21
	의원국외여비	25 (- 의원 정수×2,000천원 - 25% 범위 자율 조정 - 자매결연 국가 방문시 35% 추가 편성 가능)	22	- 3
지방보조금		9,985 (100% 시비 편성 한도액)	8,035	- 1,9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 기본수당:200,000원/월 - 연 상여금 200% - 회의 참석수당:20,000 ○반장수당 : 연50,000원	좌동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32,000원/인	“	0
공무원 일·숙직비		50,000원/인	“	0

####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047	-14,126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38	2,047
인건비 절감	0	2
지방의회경비 절감	20	9
업무추진비 절감	221	21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934	43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210	-1,461
지방청사 관리·운영	3,365	2,853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1,018	-14,12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462	2,319
지방세 체납액 축소	-8,387	-7,906
경상세외수입 확충	-299	95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7	-8,738
탄력세율 적용	-882	-737
지방세 감면액 축소	-65	-18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양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5
수입징수 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15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 2015년에 우리 양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연번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90
1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150
2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4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